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5. 7.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고 있으나, 현행법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조문도 있어 관련된 조문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0조제1항 본문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 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 다), 후보자의 배우 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u>출생지·가족관계</u> <u>·신분·직업·경</u> <u>력등·재산·행위</u> <u>·소속단체</u> , 특정 인 또는 특정단체 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 실한 사실로서 공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현행 과 같음)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 ----- ----- ----- ----- ----- ----- ----- <u>출생지·가족관계</u> <u>·신분·직업·경</u> <u>력등·재산·소속</u> <u>단체</u> , ----- ----- ----- ----- ----- ----- ----- -----

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u>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u>,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 ----- <u>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u>,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74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신정훈 · 장종태 · 채현일
박정현 · 모경중 · 위성곤
김용민 · 황명선 · 이광희
부승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50조제1항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에 허위사실공표 대상으로 행위를
삭제함(안 제110조제1항 본문).

나.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에 허위사실공표 대상으로
행위를 삭제함(안 제110조의2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본문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제250조제1항 중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를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u>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행위 · 소속단체</u>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 ----- ----- ----- -----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소속단체,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u>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행위 · 소속단체</u>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소속단체, ----- ----- -----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を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출생지・
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
・재산・소속단체-----

에 處한다.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